조 삼 적 人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	기	관	의	장	
선					
람					



제1330호

2024. 4. 26. (금)







시화-철쭉 시조-갈매기 시목-느티나무

고 시

○ 삼척시 고시 제2024-96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------

공 고

○ 삼척시 공고 제2024-700호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-----○ 삼척시 공고 제2024-705호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 교체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----- 6 ○ 삼척시 공고 제2024-727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― 12 ○ 삼척시 공고 제2024-728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― 18 ○ 삼척시 공고 제2024-743호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-----○ 삼척시 공고 제2024-749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 체육시설 등) 변경(안) 열람 공고 -----

공하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문화홍보실 (전화 : 570-3221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24-96호

도로명주소 부여 ·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,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·변경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4. 26.

삼 척 시 장

도로명주소 부여: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25-25 외 2건

		도로명주소	5	로명	
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
- 8	주소	고시일 (별지참	2000		부여사유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만원과(☎570-3946 ~ 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.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 되며,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번경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· 변경 고시

순	Z 1 7 1	도로	명주소		도로명	
번	종전주소	주 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
1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246-2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25-25	20240426	신규 부여	20090626	역사인 <mark>물이승휴</mark> 의호 (동안)활용
2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88-3, 286-3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49-9	20240426	신규 부여	20090626	일련번호방식, 행정구역명사용 (삼척로분기)
3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길 48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길 42	000 40 400	분할 변경 20090626	20000626	행정구역명사용
,	신기길 48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길 48	20240420	균을 만하	20090020	88T - 6/18
		o]	하	여	백	
2						
5. 97.						
8-8	:			2		

삼척시 공고 제2024-700호

폐기 및 재등록 공인 공고

「삼척시 공인 조례」 제10조에 의거 폐기 및 재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
삼 척 시 장

- 1. 폐기 및 재등록 사유 :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
- 2. 폐기 및 재등록 연월일 : 2024. 4. 17.
- 3.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7.
- 4. 폐기 및 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

<재등록 공인>

-성내동-

구분	공 인 명	규격(c∎)	인 영	재등록 사유	비고
	삼척시장인 (성내동통합기 전용)(세로)	3.0×3.0 (정방형)	심청시 장마인 생년동통합기건송		
재등록 공인	삼척시장인 (성내동통합기 전용)(가로)	3.0×3.0 (정방형)		알아보기 쉬운	
1820	성내동장인 (민원실통합기 전용)(세로)	2.7×2.7 (정방형)		- 글자체로 변경	
	성내동장인 (민원실통합기 전용)(가로)	2.7×2.7 (정방형)			

<폐기 공인>

-성내동-

구분	공 인 명	규격(a∎)	인 영	페기 사유	비고
	삼척시장인 (성내동통합기 전용)(세로)	3.0×3.0 (정방형)			
페기 공인	삼척시장인 (성내동통합기 전용)(가로)	3.0×3.0 (정방형)		알아보기 쉬운	
90	성내동장인 (민원실통합기 전용)(세로)	2.7×2.7 (정방형)		· 글자체로 변경	
	성내동장인 (민원실통합기 전용)(가로)	2.7×2.7 (정방형)			

삼척시 공고 제2024-705호

폐기 및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

「삼척시 공인 조례」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폐기 및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2일

삼 척 시 장

1. 폐기 및 재등록 사유 :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

2. 폐기 및 재등록 연월일 : 표 비고 참조

3.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표 비고 참조

4. 폐기 및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명 및 인영

<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>

구분	공 인 명	규격(c∎)	인 영	재등록 사유	비고
	삼척시장인	3.0×3.0 (정방형)	삼척 시장인	0000000	* 재물론 연절일 : 2024, 4, 1, * 재물론 금인 최료 사용일 : 2024, 4, 1,
재등록 전자 이미지 공인	삼척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	3.0×3.0 (정방형)	삼척시제 난안전대책 본부장인	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	* 재등록 연절일 : 2024, 4, 1, * 재등록 공인 최윤 사용일 : 2024, 4, 1,
	삼척시농업 기술센터 소장인	2.7×2.7 (정방형)	삼척시농 업기술센 터소장인		* 재금록 연월일 : 2024, 4, 1, * 재품록 골인 최초 사용일 : 2024, 4, 1,

구분	공 인 명	규격(㎝)	인 영	재등록 사유	비고				
	삼척시보건소 장인	2.7×2.7 (정방형)	삼척시보 건소장인						→ 재금록 연합일 : 2024. 4. 1. → 재금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.
	삼척시보건소 도계읍보건 지소장인	2.4×2.4 (정방형)	삼척시보건 소도계읍보 건지소장인		* 재등록 연합일 : 2024. 4. 1. *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.				
	삼척시보건소 원덕읍보건 지소장인	2.4×2.4 (정방형)	삼척시보건 소원덕읍보 건지소장인		* 재금복 연합일 : 2024. 4. 1. * 재금복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;				
	삼척시문화 예술센터 소장인	2.7×2.7 (정방형)	삼척시 문화에 술센터 소장인		+ 재등록 연합일 : 2024. 4. 15. +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5.				
재등록 전자 이미지 공인	도계읍장인	2.7×2.7 (정방형)	드게 읍장인	알마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	* 재등록 연합일 : 2024. 4. 1. *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.				
	원덕읍장인	2.7×2.7 (정방형)	원덕 ^{옵장인}		* 재등록 연합일 : 2024. 4. 18. *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8.				
	원덕읍임원 출장소장인	2.4×2.4 (정방형)	원덕옵 임원출장 소장인		* 재종록 연합일 : 2024. 4. 15. * 재종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5.				
	근덕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근덕 면장인		* 재종류 연합일 : 2024. 4. 15. * 재종류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5.				
	하장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하장 면장인		* 재등록 연합일 : 2024. 4. 15. *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5.				

구분	공 인 명	규격(c∎)	인 영	재등록 사유	비고
	노곡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노곡 면장인		* 재물록 연합일 : 2024. 4. 15. * 재물록 곧인 최초 사물일 : 2024. 4. 15
	미로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미로 면장인		* 재물록 연합일 : 2024. 4. 16. * 재물록 골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6
	가곡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가곡 면장인		* 재물록 연합일 : 2024. 4. 1. * 재물록 골인 최초 사물일 : 2024. 4. 1
재등록 전자	신기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<u>신기</u> 면장인	알아보기 쉬운	* 재물록 연월일 : 2024. 4. 1. * 재물록 공인 최초 사물일 : 2024. 4. 1
이미지 공인	남양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남양 동장인	글자체로 변경	* 재등록 연합일 : 2024, 4, 15. *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, 4, 15
2	성내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성내 동장인		* 재물론 연합일 : 2024. 4. 15. * 재물론 금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16
	교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교통 장인		* 재등록 연합일 : 2024, 4, 17, *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, 4, 17
	정라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정라 동장인		* 재등록 연합일 : 2024, 4, 15, *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, 4, 15

<폐기 전자이미지 공인>

구분	공 인 명	규격(c∎)	인 염	폐기 사유	비고
	삼척시장인	3.0×3.0 (정방형)			• BIJI 전 월일 : 2024. 4. 1.
	삼척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	3.0×3.0 (정방형)			• 명기 연합일 : 2004. 4. 1.
	삼척시농업 기술센터 소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• 명기 연합일 : 2024. 4. 1.
폐기 전자 이미지	삼척시보건소 장인	2.7×2.7 (정방형)		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	• 폐기 연원일 : 2024, 4, 1,
공인	삼척시보건소 도계읍보건 지소장인	2.4×2.4 (정방형)	점찰((보건) 목도립음보 건((도))	변경	• 명기 연립일 : 2024, 4, 1,
	삼척시보건소 원덕읍보건 지소장인	2.4×2.4 (정방형)			• 명기 연합일 : 2024. 4. 1.
	삼척시문화 예술센터 소장인	2.7×2.7 (정방형)	型に変し、関いるのでは、これでは、これでは、これでは、これでは、これでは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、これに		• 명기 연합일 : 2024. 4. 15.
	도계읍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+ 폐기 연합일 : 2024. 4, 1,

구분	공 인 명	규격(c∎)	인 염	폐기 사유	비고
	원덕읍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* 폐기 연절일 : 2024: 4. 18:
3 5	원덕읍임원 출장소장인	2.4×2.4 (정방형)			* 메기 연월일 : 2024: 4. 15.
	근덕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* 폐기 연절일 : 2024: 4, 15.
폐기 전자	하장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	알아보기 쉬운	+ 폐기 연합일 : 2024. 4. 15.
이미지 공인	노곡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是高	글자체로 변경	* 펭기 연합일 : 2024. 4. 15.
	미로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* 폐기 연합일 : 2024. 4. 15.
	가곡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四高河		• 폐기 연출일 : 2024. 4. 1.
	신기면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* 폐기 연원일 : 2024: 4. 1.

구분	공 인 명	규격(c∎)	인 영	페기 사유	비고
	남양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高い	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	+ 폐기 연절일 : 2024. 4. 15.
페기 전자	성내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+ 폐기 연험일 : 2024, 4, 15.
이미지 공인	교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高記		* 폐기 연합일 : 2024: 4. 17.
	정라동장인	2.7×2.7 (정방형)			• 폐기 연합일 : 2024. 4. 16.

삼척시 공고 제2024-727호

『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제41조 및 『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4년 04월 23일 삼 척 시 장

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,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(개정) 2026년 12월 31일
- 나,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(개정) 2026년 12월 31일

3. 입법에고기간 : 2024. 04. 23. ~ 05. 13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- 라, 의견제출 및 문의처
 - 주 소 : (우25914)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
 - 전화: 033 570 3296
 - 팩 스 : 033 570 3134

5. 참고사항

이 조례(규칙)안은 삼척시 홈페이지(http://samcheok.go.kr) 입법/ 공고/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- 2.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삼척시조례 제 호

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조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	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
한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한 감면)
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놈업·놈	
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50조	
제1항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	
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	
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	<u>20</u>
<u>23년 12월 31일</u> 까지 취득하고	<u>26년 12월 31일</u>
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	
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「수도권	
정비계획법」 제6조에 따른 과	
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	
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	
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	
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	
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	
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	
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	
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	
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	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	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
한 감면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	한 감면)
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에	
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1. ~ 3. (생 략) 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	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

서 휴업(「부가가치세법」제8 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 다) 또는 폐업(폐업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 다)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 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.

<u>2026년 12월 31일</u>
,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조례명:

- 성명(단체명):
- ○주 소:
- 연 락 처 :

조 례 안	검 토 의 견		
(시행규칙안)	수정안	검토사유	

삼척시 공고 제2024-728호

『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제41조 및 『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4년 04월 23일 삼 척 시 장

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의 개정(2023. 12. 29.)으로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정비 (안 제5조제1항)
 -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을 "30만원"에서 "45만원"으로 변경

3. 입법에고기간 : 2024. 04. 23. ~ 05. 13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,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- 라. 의견제출 및 문의처
 - 주 소 : (우25914)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
 - 전화: 033 570 3296
 - 팩 스 : 033 570 3134

5. 참고사항

이 조례(규칙)안은 삼척시 홈페이지(http://samcheok.go.kr) 입법/ 공고/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- 2.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삼척시조례 제 호

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후단 중 "30만원"을 "45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	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
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	
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	
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	
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	
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	
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	
로 하되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	<u>45만원</u> -
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	
할 수 있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조례명:

- 성명(단체명):
- ㅇ주 소:
- 이연 락 처:

조 레 안	검 토 의 견			
(시행규칙안)	수정안	검토사유		

삼척시 공고 제2024-743호

폐기 및 재등록 공인 공고

「삼척시 공인 조례」 제10조에 의거 폐기 및 재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5일

삼 척 시 장

- 1. 폐기 및 재등록 사유 :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
- 2. 폐기 및 재등록 연월일 : 2024. 4. 25.
- 3.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: 2024. 4. 25.
- 4. 폐기 및 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

<재등록 공인>

-정라동-

구분	공 인 명	규격(a∎)	인 영	재등록 사유	비고
	정라동장인 (민원실인증기 전용2호)	2.7×2.7 (정방형)	전라동	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	
재등록 공인	정라동장인 (민원실통합기 전용)	2.7×2.7 (정방형)	전 구 등 등 이 원실등합기전용		
	삼척시장인 (정라동통합기 전용)	3.0×3.0 (정방형)	스타지 시 지나의 정라동통합기전용		

<폐기 공인>

-정라동-

구분	공 인 명	규격(c∎)	인 영	폐기 사유	비고
	정라동장인 (민원실인증기 전용2호)	2.7×2.7 (정방형)		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	
폐기 공인	정라동장인 (민원실통합기 전용)	2.7×2.7 (정방형)	であった。		
	삼척시장인 (정라동통합기 전용)	3.0×3.0 (정방형)			

삼척시 공고 제2024-749호

도시관리계획(시설: 학교, 체육시설 등) 변경(안) 열람 공고

근덕면 장호리 201번지 일원 학교(중학교) 및 도로 폐지와 교통 254번지 일원 체육 시설(종합운동장) 확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「삼척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주 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
삼 척 시 장

- 가. 주요 내용: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 - 학교6(장호중학교), 소로2-23(학교 진출·입도로) 폐지
 - 체육시설1(삼척 종합운동장)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: 면적 88.894㎡
- 나. 열람기간: 2024, 4, 26, ~ 2024, 5, 10, (15일간)
- 다 열람장소: 삼척시청 도시과(관계 서류 비치)
- 라,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삼척시장(도시과장)에게 제출(열람 기간 내)할 수 있으며, 공고 관련 기타 사항은 🗗 033-570-3876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